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관 등〉

■ 강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036호)

2021.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민정 · 최강욱 · 김윤덕 · 이상현 · 강득구 · 서동용 ·
배진교 · 용혜인 · 김진애 · 조정훈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3. 23.
3. 회부연월일 : 2021.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최고 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3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정무직·별정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0조(보조기관) ① -----소속하에----- -----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해당 ----- ----임명한다.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교육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청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교육감 결위 등의 사유 발생시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¹⁾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주요 보조기관²⁾이므로, 그 자격이나 임명주체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규정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육감은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지방 교육 최고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특히 교육감 이외에 가장 고위직인 부교육감을 중앙 정부에서 임명되는 공무원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및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처럼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일반직·정무직·별정직) 중에서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의 측면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부교육감에 국가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가인 국가공무원을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 또한 장점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2인의 부교육감 중에서 1인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나머지 1인은 지방공무원으로 포함으로써 이러한 장·단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지방자치법」³⁾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여 국가행정과의 연계 및 지방자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⁴⁾인 교육감이 직접 임명하더라도 현행 공무원 임용 체계

3)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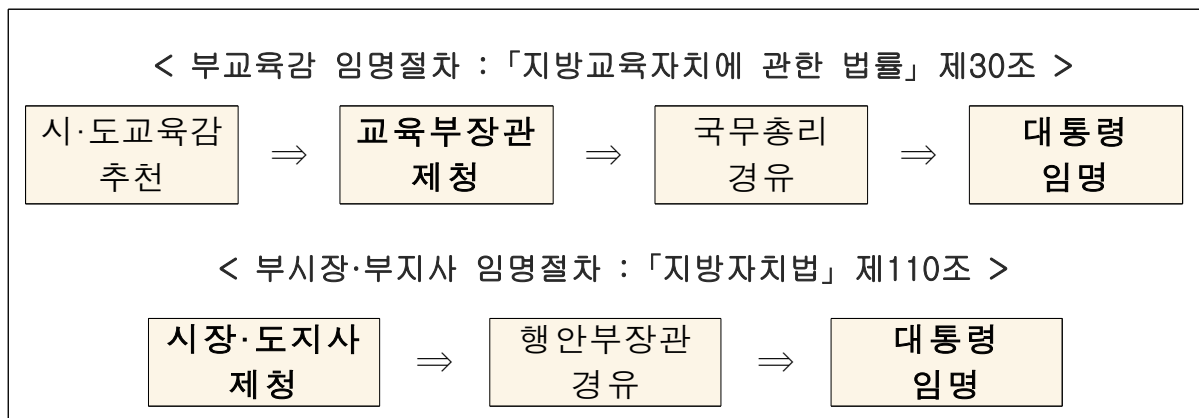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와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교육공무원법」 5)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장학관”을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9조6)에 따라 장학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공무원을 부시장·부지사로 임명할 때 시장·도지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7)과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감과 부시장·부지사 임명절차 비교>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7)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84
